

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5. 21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3년 5월 17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5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5. 21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사회과장 정형진)

가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배양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명칭과 위치(안 제2조)

- 사하구종합복지관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동 12-278번지에 둔다.
- 다대사회복지관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다대동 113-12번지에 둔다.

○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(안 제5조)

-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생활보호대상자
 - 사회복지시설수용자
 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(제4조)

-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 -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
 - 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
- 동장이 해당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추천된 자를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선발

○ 제7조 장학금 지급정지

- 학업성적이 불량, 퇴학, 정학, 휴학 처분 타시도 전학, 목적외 사용, 거주지를 구관외로 이주시

○ 제8조 장학금의 조정 및 관리

- 장학금 조성목표 : 3억원
- 장학금 조성 :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함
- 장학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
-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

3. 검토의견

- 장학생 선발에 있어 동장이 제3조 내지 제4조의 해당자 중에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 추천시 학교장의 추천서, 학업성적서,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 추천토록 명문규정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장학생 선발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영세어민 및 저소득층의 기준을(즉, 생활사향)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의 장학기금은 '93년도 당초 예산에 6,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의 자녀 장학열을 제고시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 (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)